비밀 유지 계약서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삼성 전자 주식회사 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<u>경기 평택시 지제동</u>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<u>아이피에스</u>(이하 "을"이라 칭함)는 2008년 11월 12일 (이하 "계약발효일"이라 칭함)부로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서(이하 "계약서"라 칭함)를 체결한다.

- 배 경 -

"갑"과 "을"은 LCD 제조공정 <u>METAL DRY ETCHER</u> 설비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, 기술 자료, Know-how (이하 "비밀 정보"라 칭함)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.

- 내 용 -

"갑"과 "을"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.

제 1 조. 비밀 정보의 소유권

"갑"과 "을"은 각각 소유한 비밀 정보가 이 정보를 제공한 측의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소유 권리 하에 있음을 동의하고 인정한다.

제 2 조. 사용 제한

"갑"과 "을"은 제공된 모든 비밀 정보가 상기 배경에 명시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제공한 측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, 각 회사 자체에서 요구되는 비밀 정보 수준으로 비중을 두어 다루어지고 보호 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. 여기서 "사용"이라 함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사, 실험, 개발,상업 혹은 다른 사업에 이 비밀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.

제 3 조. 제외 대상

아래의 경우에는 비밀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:

- 가. 주지의 사실로 발표된 정보인 경우
- 나. 본 계약 하에서 정보를 공개한 후 정보 제공측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출판에 의하거나 혹은 정보를 수령한 측의 잘못없이 주지의 사실로 된 경우
- 다. 정보를 수령한 측이 정보를 받을 당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밀유지 의무하에 획득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
- 라. 제3자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없이 독립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제 3자는 비밀유지 의 무하에서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

제 4 조. 종업원 준수 규정

- 가. "갑" 과 "을" 은 제품의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되어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 "갑" 과 "을" 각사의 종업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, 공개된 비밀 정보를 열람하는 종업원들에게는 본 계약서에 주어진 제한 규정을 인지시키도록 합의한다. 이 외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.
- 나. 단, 본 계약의 목적상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하며, 본 계약에 준하는 제3자와의 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비밀 공개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(갑) 또는 (을)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.

제 5 조. 비밀유지 기간

"갑"과 "을"은 본 계약내용이나 본 계약하에 제공된 비밀 정보를 본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종료일로부터 3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며, 어떠한 비밀 정보도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.

제 6 조. 실시권 제한

본 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임의의 권리나 지적재 산권을 상대방에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.

제 7 조. 계약기간 및 종료 조건

- 가. 본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나. "갑" 과 "을" 양자는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, 상대방이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이 때 위반 측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배상해야 하며 상대방은 위반 측에 대하여 모든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 8 조. 자료 반환

제 7조에 따라 본 계약 종료되거나 "갑"과 "을"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비밀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며 파기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파 기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
제 9 조. 준거법

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,적용된다.

제 10 조. 독립성



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,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 하더라도,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.

제 11 조. 수정

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다.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양사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각사 공인된 대표의 상호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삼성전자주식회사

성명 : 이 윤 우

직위: 대표이사

(주)아이피에스

성명: 문상영

직위 : 대표이사

